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제특허에 대한 이해

탁 일 천

(주)동화엔지니어링 대표  
(gofire@gofire.co.kr)

## 1. 서 론

오늘날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위험이 세계경제로 이어지고 불확실성의 여파로 인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펀드에 몰입하던 많은 투자자들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경제는 혼돈의 상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식이 중추적 기반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요소보다 과학기술 혁신 요소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가치도 지적 자산으로 평가될 만큼 기술적 요소와 경영의 조화가 기업생존의 필수적 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각국은 이미 국가전략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적 자산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지적 자산제도의 변화 등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나라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술 보안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고심하고 있으나 수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의 지적 자산에 대한 유출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간 무역협상과 지적재산권 협상의 연계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특허 보호전략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 기술이 활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신제품 개발방법, TQM(Total Quality Management), CE(Concurrent Engineering) 등 전사적 전략을 통한 기술개발과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R&D 부문과 사업부문의 연계, 기술로드맵, 기술개발의 포트폴리오 등 새로운 지배제품(Dominant Design)의 창출을 위한 글로벌화가 한층 가속화 되는 가운데 국제특허 보호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적 재산의 life cycle(창출, 보호, 활용)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선 국제특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협정조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허협정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란 발명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한 출원절차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에 여러 국가의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발명자의 비용부담을 덜고 각국 특허청의 중복된 심사를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CT국제출원 절차는 출원인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지정국)를 기재한 국제출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시작되며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 PCT 국제출원

### 1) PCT 국제출원제도 개요

- 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또는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2004. 1. 1 이후의 출원부터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의 제출로서 국제출원일 시점의 모든 PCT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게 됨

- 장점

-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방지

- 주요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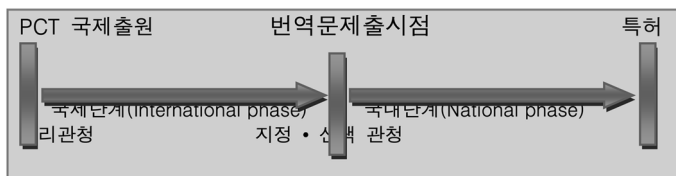
- 수리관청: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
- 지정관청: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희망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 선택관청: 지정관청 중에서 예비심사결과가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 PCT 국제출원 언어

- 국어, 일어 또는 영어
- 국어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반드시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일률적으로 진행)와 국내단계(지정국 각각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로 구분



### 2) PCT 국제출원 절차

- PCT 국제출원서류의 작성·제출

- 출원서 서식(Request Form)배부처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팀,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청 홈페이지(민원서식), WIPO 홈페이지
- 국제출원 제출처 :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

- 제출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있는 경우), 요약서: 전자적 형태 제출시 1부, 서면으로 제출시 3부(PCT-EASY에 의한 출원시 FD 1부 추가)

※ 2005. 2. 11이후 온라인 제출 가능

※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 또는 특허청에 송달신청

- 국제출원의 시기

- 우선권 주장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도달주의 채택

우편출원시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때를 제출일로 인정하므로 주의요망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우리나라 관할 국제조사기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판단을 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국제공개시기

- 일반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직후

- 조기공개: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 국제공개형식

-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 및 각 지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송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우리나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

※ 국제예비심사청구 기간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중 늦은 때까지임(2004. 1.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특징

-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청구하여야 함

- 개정된 조약에 의한 국내단계진입 기간(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단, 우리나라는 31개월)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Demand)를 제출하여야 함

\*스위스, 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2007. 7. 1 현재)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제출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 제출기한

- 출원인은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단, 우리나라는 3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 수수료 납부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

※ 개정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까지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2007. 7. 현재 4개국 : 스위스, 룩셈부르크, 우간다, 탄자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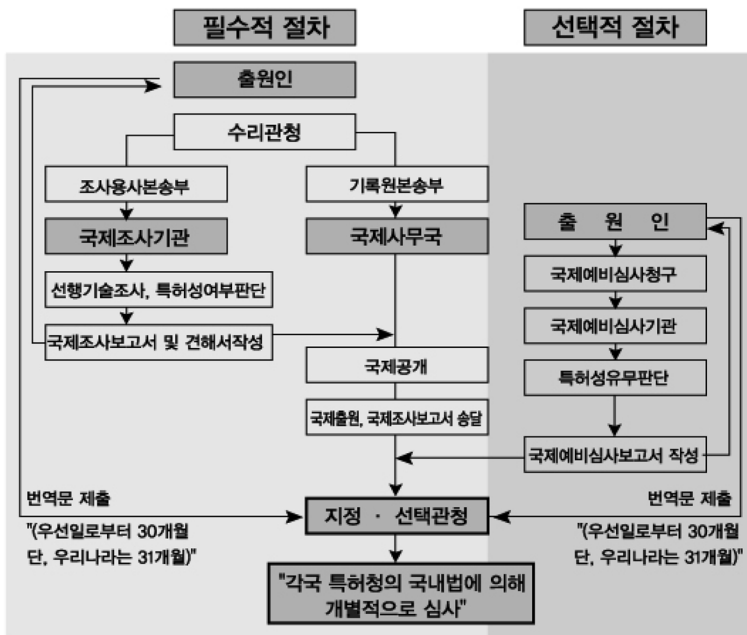
-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심사의 진행

-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

### 3) PCT 국제출원 흐름도



##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

### 1) 상표의 국제출원 개요

• 의의

- 출원인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또는 주소지(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특허청(Office of origin)을 통하여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제사무국에 제출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제특허에 대한 이해

-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국제등록을 한 후에 각 지정국가(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에 통지, 각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1년 내지 1년6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러한 통지가 없을 경우 그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효과발생

- 우리나라 시행시기 : 2003. 4. 10

### 마 드 리 드 의 정 서

-채택일 : 1989. 6. 27 발효일 : 1995. 12. 1 시행일 : 1996. 4. 1  
-가입국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74개국 (2007.7.16)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장점
- 번역문 없이 다 국가에 1출원 시스템(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 단 우리나라는 영어만 가능)
- 국내단계 진입 시 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음
- 각 지정국에 별도의 갱신등록 또는 명의변경등록이 필요 없음(하나의 국제등록부로 일괄관리)

## 2)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 국제출원절차 일반
- 출원인 적격
  -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를 가진 자
- 국제출원서의 제출
  - 국제출원서(MM2) 1부를 작성, 첨부한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 1부를 특허청에 제출
  - 국제출원서(MM2)는 국제사무국에서 정한 공인서식으로 반드시 이 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국제출원서(MM2)와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특허청 마드리드홈페이지([www.madrid.go.kr](http://www.madrid.go.kr))와 “국제출원절차→서식작성요령에서 다운로드 가능(“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작성요령은 동 서식 부분의 기재요령 참고)
  - 국제출원은 반드시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이를 국제출원으로 간주하지 않음
  - 대한민국특허청에 제출하는 국제출원서(MM2)는 영어로만 작성
  - 우선권주장은 해당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본국관청 절차
- 출원인은 자국 또는 주소지(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출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특허청을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는 본국관청(Office of origin)이라 함
- 본국관청 즉, 특허청에서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과 국제출원간의 기재사항 합치여부를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하면 그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이 신청을 접수한 날을 국제등록일로 인정

### 본 국 관 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청에 계속 중인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국제출원(영어로 작성)을 하는 경우의 특허청

## 탁 일 천

### • 국제 등록 및 국제 공고

-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국제출원서의 국제출원인 자격요건, 지정국기제의 적정성, 상품분류의 적합성, 명확한 상품기재여부, 수수료납부 여부 등에 대해 방식심사
- 방식심사결과 요건이 충족되면 국제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등록증을 송부하며 본국관청 및 지정관청(Offices o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에 통보
-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한 사항을 공보(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에 게재

### • 지정국 관청 절차

- 특허청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영문국제출원서를 송부 받아 상표심사를 수행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
-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해 주어야 하므로 기간관리가 중요

### 지 정 국 관 청

외국인이 외국특허청을 통하여 제출한 국제출원에서 아국을 지정국으로하여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을 한 후, 국제사무국이 특허청에 지정통지를 한 경우의 특허청

### •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

#### - 의의

국제출원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정계약 당사자를 국제출원 후에 지정하여 보호의 영역을 확장(territorial extention) 하는 것을 말함

#### - 유용성

- 출원인이 국제출원 당시에는 영업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던 계약당사자가 후에 필요하게 된 경우
- 국제출원시에는 의정서에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
- 거절, 무효 또는 포기 등으로 그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보호되지 않았던 것이 후에 보호가 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유용

#### - 요건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지정국이 의정서 계약당사자(가입발표 확인필요)이어야 함
- 국제출원의 언어와 상관없이 영어 또는 불어로 통보가능
-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거나 특허청에 제출가능
- 서식은 사후지정신청서(MM4)를 사용
- 출원인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 - 사후지정의 효력

- 사후지정일자: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일 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수령한 날이 사후지정일
- 지정계약당사자에서의 효력: 사후지정일로부터 국제등록과 동일한 효력 발생

### • 국제 등록의 변경

#### -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 국제사무국이 정한 공식서식(MM9)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 비공식서식(MM10)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편지로도 가능하며 신청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감축, 포기, 취소
  - 감축: 지정계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목록의 감축을 말하며 공식서식(MM6)을 사용
  - 포기: 모든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부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한 보호의 포기를 말하며 공식서식(MM7)을 사용
  - 취소: 일부 또는 전체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든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한 국제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공식서식(MM8)을 사용
  - 감축등록신청은 수수료납부 대상이지만 포기 또는 취소등록신청은 수수료 없음
- 국제등록 명의 변경
  - 국제사무국의 공식서식(MM5)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거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할 수 있으며 국제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국제등록의 명의 변경은 국제등록에 포함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
- 국제등록부의 경정
  - 국제등록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나 관청의 신청에 따라 경정처리함
  -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문서와 국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국제 사무국이 경정
  -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문서와 계약당사자(특허청)의 등록원부 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관청에 경정신청을 하여야 함
- 국제등록의 갱신
  - 권리자는 10년의 보호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국제 등록갱신신청(MM11서식)을 특허청이나 국제 사무국에 직접제출가능
- 국제등록의 종속 및 독립
  - ‘종속성’이란 국제등록의 운명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본국관청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달려있음을 말함. 즉, 이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그 기간 내에 개시된 소송의 결과로서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이 취소, 포기, 철회, 무효 또는 소멸되거나 기초출원이 최종 거절되거나 취하된 경우 국제등록의 보호도 함께 소멸됨
  - ‘중심공격’(Central attack)이란 국제등록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종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기초가 되는 하나 만에 대한 공격으로 모든 지정계약당사자에서 국제등록을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함
  - ‘독립성’이란 국제등록이 5년의 종속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기초표장으로 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함
  - ‘국내 또는 지역출원으로의 전환’이란 종속기간 내에 본국관청에서 기초표장의 소멸로 국제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제등록이 효력을 가졌던 지정계약당사자에 동일한 표장의 등록을 출원하는 것을 말하며 제반 요건에 맞는 경우 이 전환으로 인한 출원은 본래의 국제등록일에 제출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됨
  - 종속기간 중 국제등록의 명의 변경은 종속성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제등록은 기초 표장에 보호 종속될 뿐임
  - 종속기간 중 국제등록의 명의 변경은 종속성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제등록은 기초 표장에 보호 종속될 뿐임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분할이나 병합은 국제등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3. PCT국제출원 수수료

#### 1) 국제출원 수수료

(2007. 7 기준)				
종류		납부액(원)	납부기간	납부처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096,000	국내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12,000		
조사료	한 국	225,000		
	오스트리아	250,000		
	호 주	1,173,000		
	일본	789,000		
송달료		45,000		

-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 번호를 부여 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않음)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PCT-SAFE내의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요약서포함)와 FD를 제출시 : 78,000원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 235,000원

#### 2) 우선권서류 송달수수료

종 류	금 액	납부시기	제출서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	우선권서류 1건당 : 500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우선일로부터16개월 이내)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 3)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국제예비심사기관	납부액(원)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소
한국	심사료	225,000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4동 특허청 국제출원팀 우)302-701
	취급료	147,000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200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sparkasse 계좌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B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취급료	EUR129		
일본	심사료	JPY 36,000	송금은행 : Bank of Tokyo-Mitsubishi 계좌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취급료	JPY 17,400		

- ①.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 되는 날 이내
- ②.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송금)하여야 함

- ③.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 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국제 예비심사 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④. 재외기관 연락처

오스트리아(AT)	일본(JP)
· 전화 : (43-1)53424-0	· 전화 : (81-3)3592-1308
· 팩스 : (43-1)53425-200	· 팩스 : (81-3)3501-6803

**4) 참조사항**

- ①.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 QUICK MENU(민원서식) ⇒ 분야별서식 ⇒ 출원, 심판 ⇒ PCT국제출원
- ②.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함

**5)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개국당 평균 700~800만원 정도 소요(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4.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 및 등록**

**1)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 수수료는 특허청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로 구분**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 마드리드의 정서의 하위 규정인 공통규칙에 규정된 금액
- 개별수수료선언을 한 국가(기구) : 해당 지정계약당사자가 정한 금액

**2)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

-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000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000원
-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 변경등록신청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000원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000원
- 개별수수료(국제사무국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정한 경우)
  -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 구분마다 280,000원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 구분마다 320,000원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 보정료 : 매건 10,000원

**3)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금액**

- 기본수수료(basic fee) : 흑백표장 653스위스프랑, 색채표장 903스위스프랑
-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 : 3개류 초과 각 1류마다 73스위스프랑

-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 : 1 지정국당 73스위스프랑  
※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는 상기 추가수수료 및 보충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음

#### 4) 납부방법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 이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그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함
- 국제사무국에의 모든 납부는 스위스 통화로 해야 하며 국제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함
  -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
  - 스위스 우편환계좌 또는 명시된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 중 하나의 계좌로 납부
  - 은행수표
  - 국제사무국에 현금으로 납부
- ※ 국제사무국과 자주 거래하는 출원인, 권리자는 국제사무국에 당좌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편리하며 이는 수수료의 납부를 매우 간소화(납부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며 늦거나 부정확한 납부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